

『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0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10월 23일

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인 숙

나. 제안이유

- 구미팜 농특산물 쇼핑몰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쇼핑몰 운영에 관한 시책 개발 및 협력체계 강화를 통하여 행정적·재정적으로 쇼핑몰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목적, 정의, 적용범위 및 쇼핑몰 운영(안 제1조 ~ 제4조)
- 위원회 설치, 위원회 기능, 위원회 구성,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(안 제5조 ~ 제9조)
- 위원회 회의, 간사 및 수당 등(안 제10조 ~ 제12조)

- 입점자격, 입점신청 및 허가 등, 입점업체의 준수사항, 입점의 탈퇴, 입점의 취소 등(안 제13조 ~ 제17조)
- 홍보, 비용지원 및 시행규칙(안 제18조 ~ 제20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영 수

○ 본 「구미팜 농특산물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은

- 구미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5년부터 운영 중인 농특산물 쇼핑몰인 「구미팜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